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나18873 판결 [압류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나18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3가단9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순일, 최호진, 문주연, 박시준, 최호진, 공병기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 선고 2024. 10.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7. 선고 2023가단9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중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1.7분의 63.6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26.

접수 제7012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 나머지 청구(아래 청구취지에 기재한 당심 추가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1.7분의 63.6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6. 접수 제70127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21. 9. 30. 접수 제22264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②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1.7분의 63.6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국유지인 서울 중구 D 대 11.1m²(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8. 변상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청구취지 기재 ①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1압류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공유지분을 E에게 증여하여 2013. 6. 17. E 앞으로 이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다른 토지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 대 51714.6m²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이에 관할관청에서는 2021. 9. 2.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이하 '이전고시'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는 2021. 9. 30. 말소 및 폐쇄되었다.

라. E는 2021. 9. 30. C 토지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압류등기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이전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②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제2압류등기'라고 한다)가 같은 부동산에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폐쇄등기부 상의 압류등기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중 이미 등기부가 폐쇄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기입된 이 사건 제1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¹⁾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의 변상금채권은 시효소멸하여 현재 납부할 변상금은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제2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이와 같이 선택한다)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의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본질을 갖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중구청장은 2005. 12. 22. 원고가 국유재산 변상금 24,341,0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경로되었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는 이 사건 제1압류등기에 터잡은 것이다.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압류등기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원은 확실히 없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삼는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E의 소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조차 없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원고가 E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점만으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행정처분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나,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참조).

중구청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중구는 2000. 12. 18. 피고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해당 처분서를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주소(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는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와 달라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는 원고의 현재 주소로서, 원고가 2008. 9. 16.부터 2009. 12. 31.까지, 2010. 1. 13.부터 2011. 12. 11.까지, 2013. 4. 1.부터 2013. 8. 28.까지 등 여러 차례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둔 적이 있기는 해도 2008년 이전에는 여기에 주소지를 둔 적이 없는데다가 법원 등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 상의 아파트는 2001. 10. 15.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처분일자인 2000. 12. 18.에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중구청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을 실제로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주소로 송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구청장의 회신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처분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

3) 이 사건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의 무효사유로 이 사건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법규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 사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행정처분의 취소는 행정소송으로만 구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민사소송에 의해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변상금 시효소멸을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변상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참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할 수는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당심 추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현

판사이상아

판사송영환

별지

1) 원고는 단순히 압류등기의 말소만을 구하고 있고 그 말소 이유가 압류처분의 취소사유 때문인지 당연무효사유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취소사유 주장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인 당연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도 원고의 청구원인을 당연무효 주장으로 보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